

- ◆ '26.8.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관련, 우리기업은 ▲식품접촉 포장재 PFAS 제한, ▲우려물질(SoC) 최소화 의무, ▲재활용 가능성 기본 원칙 적용에 따른 공급망 전반 사전 점검 필요
- ◆ EU 집행위원회, PPWR 해석을 돕기 위해 '26.8.3일 재고 처리 및 포장 구분 기준 명확화 등 상세 내용을 포함한 2차 FAQ를 발표('26.3.30일 지침문서 및 1차 FAQ 발표)

<기업 유의 사항>

- '26.8.12일부터 PPWR의 일반 적용이 시작되며, 포장재 내 우려물질(SoC, Substances of Concern) 최소화 의무와 식품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 제한도 함께 적용됨.
- PPWR은 EU 역내 생산품뿐 아니라 수입 포장재 및 수입제품 포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대EU 수출기업도 적용 대상임.
- 식품, 화장품, 생활소비재, 전자상거래 제품 등 포장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대EU 수출품이 규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포장재 설계·재질·라벨링·우려물질 관리·공급망 자료 확보 여부가 향후 바이어 대응의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큼.
- 식품접촉 포장재의 경우 '26.8.12일 이후 EU 시장에 최초 출시되는 제품은 PFAS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기업은 공급망 차원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I. 개요

- EU 집행위원회,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지침 문서(Guidance document) 및 FAQ 발표
 - EU 집행위원회는 PPWR의 일관된 해석과 이행 지원을 위해, 추가 해석이 필요한 규정과 이해관계자들이 명확화를 요청한 사항을 설명하는 자료임.
 - FAQ는 PPWR 발효 이후 제기된 다양한 실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필요시 FAQ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임.
 - 본 지침 문서와 FAQ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PPWR 초기 이행 과정에서 하위법령 마련 전까지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 **(개요)** EU의 포장 감축, 재사용 확대, 재활용 촉진 등을 통해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역내 관련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법으로, 기존 포장 지침(Directive 94/62/EC)을 대체하며 '30년까지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함
- **(입법 경과)** EU 집행위원회 제안('22.11.30일) → 3자 합의('24.3.4일) → 의회 최종 승인(4.24일) → EU 이사회 최종 승인(12.16일) → EU 관보 게재('25.1.22일) → 발효(2.11일) → 적용('26.8.12일~)
- * 일반 적용일은 '26.8.12일이나,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소재 함량 목표, '30년까지 재사용 목표 등은 단계적 적용

II. 주요 내용

주요 정의

□ 포장재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특정 품목이 PPWR상 포장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속서 I의 예시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제3조 제1항 제1호의 포장 정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핵심 판단 기준은 해당 품목이 실제로 ①제품의 보관·보호·취급·배송·제시 기능을 수행하는지, ②제품의 불가분한 일부가 아닌지, ③제품과 함께 사용·소비·폐기되는지 여부임.
- 부속서 I은 예시목록으로, 포장재 또는 비포장재로 분류된 품목이라도 실제 기능과 의도된 용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참고> 지침 문서에서 제시한 주요 품목별 해석 사례

- 접착 필름 : 제조과정 내 기능 수행 목적으로 이후 공정에서 제거 시 포장재가 아님. 최종 제품의 보호 또는 운송이 목적일 때 포장재에 해당함. 기능과 맥락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함.
- 신발·의류용 더스트백 :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을 보호·제시하는 용도로 사업자가 제품 공급의 일환으로 시장에 출시할 경우 포장재에 해당함. 다만, 섬유 재질의 판매 포장에 해당하면 제6조 제11항 (g)에 따라 재활용성 관련 제6조 제2항·제3항의 적용이 면제됨.
- 정맥주사 백(IV bag) 및 주사기 : 의약품이나 식염수 등이 미리 충전된 정맥주사 백과 주사기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하게 투여하기 위한 전달 장치로 간주되어 포장재에 해당하지 않음.

☑ 실무 대응 TIP

- 자사 수출품의 포장 요소가 PPWR 상 포장재에 해당하는지를 지침 문서 기준에 따라 개별 검토
- 부속서 I 분류와 무관하게 실제 기능·의도된 용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근거를 기술문서에 명시

□ 판매포장 · 그룹포장 · 운송포장의 구분 기준 명확화

- (판매포장) 제품과 함께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단위를 구성하는 포장으로 제품 보호 · 브랜딩 · 소비자 정보 제공 기능 수행
- (그룹포장) 여러 판매 단위를 묶어 재고관리, 진열 또는 복수 구매를 용이하게 하는 포장으로, 제거하더라도 개별 제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포장
- (운송포장) 하나 이상의 판매 단위를 운송 · 취급하면서 손상을 방지하는 외부 포장으로,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상자 · 팔레트 · 포장재 등이 포함

□ 제조업체와 생산자 개념 구분

- PPWR는 제조업체(manufacturer)와 생산자(producer)를 별개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각각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상이함.

	제조업체	생산자
정의	· 포장재·포장된 제품의 제조업체 · 실제 포장재 생산자가 아니라, 포장재를 주문하고 그 설계 사양을 결정하는 자 · 다만 상표권자가 초소형 기업이고, 포장재 공급자가 동일한 회원국에 소재하는 경우, 공급자가 제조업체로 간주되는 예외 적용	· 포장재·포장된 제품을 해당 회원국에 처음으로 공급하거나, 또는 다른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모든 제조자,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
범위	· EU 전역에서 하나의 경제주체	· 포장재가 폐기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원국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경제주체
주요 의무	· 포장재의 지속가능성·라벨링 요건 충족 확인	· 해당 회원국에서 폐기물 관리 비용 부담

자료 : PPWR 지침 문서

- EU 역외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EU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도 생산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판매 대상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행 및 공인대리인 지정 의무를 확인해야 함.
- 한국 기업이 EU 바이어(수입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통상 해당 EU 수입자가 생산자가 됨. 다만 한국 기업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표로 포장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를 의뢰했다면, 제조업체로서의 지위와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함.

☑ 실무 대응 TIP

-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별로 제조업체를 식별하고 기술문서(TD)·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책임 확인
- 포장이 폐기물이 되는 회원국별 생산자를 식별하고 EPR 등록·분담금 의무 확인
- EU 최종 사용자 대상 직접판매 시 회원국별 EPR 등록 및 공인대리인 지정 여부 검토

□ 수입자의 정의와 지점(branch)의 지위

- PPWR상 수입자는 'EU에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제3국의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자'로 정의되며, 여기서 '설립(established)'은 EU 내 등록된 주소를 보유한 별도의 법적 인격체로 한정함.
- EU 내 지점(branch)은 모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PPWR 상 수입자로 인정될 수 없음.
- EU 및 회원국 세법에 따르면, 지점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됨. 그러나 납세 의무가 있고 세무 등록을 했다고 해서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규제 준수 목적상 독립 법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동일한 논리가 유통업자(distributor) 정의에도 적용, 지점은 유통업자로 비인정

☑ 실무 대응 TIP

- EU 내 지점만 보유 시, 자회사 설립 또는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지정 필요
- EU 시장에 직접 공급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대리인 계약서 사전 준비

주체별 의무

□ 포장 공급업체와 제조자의 기술자료 제공·관리 책임 명확화

- (공급업체) 포장 또는 포장재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EU 적합성 선언을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제조자가 PPWR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함.
- (제조자) 시장에 출시하는 포장의 PPWR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 법적 책임을 부담

□ 비EU 제조자의 포장을 취급하는 수입자 의무 구체화(PPWR 제18조)

- 수입자는 '26.8.12일부터 비EU 제조자의 적합성평가, EU 적합성 선언, 식별·표시 및 관련 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자 정보를 포장 또는 수반 문서에 표시해야 함.
- 일반·무상표 포장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비EU 공급자와 기술자료 제공, 사양 변경 통지 및 당국 대응 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

우려물질 및 PFAS

□ 우려물질(SoC) 관리 의무 및 PFAS 제한

- PPWR상 우려물질(SoC, Substances of Concern)은 ESPR 제2조 제27항의 정의를 준용하며,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SoC로 인정됨.
- PPWR은 포장재 내 SoC 존재와 농도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모든 SoC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 농도 기준은 없음.
- PFAS 및 일부 중금속과 같이 특정 물질에는 별도 기준이 존재하며, SoC 최소화 의무는 '26.8.12부터 모든 포장재에 적용됨.
- 포장재 공급업체는 제조자의 적합성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제공해야 함.
- PPWR은 '26.8.12일부터 식품 접촉 포장재에 PFAS(과불화화합물) 함량이 아래 기준치 이상인 경우 EU 시장 출시를 금지함.

기준 항목	한도값	비고
단일 PFAS	25ppb	표적 PFAS 분석 기준(고분자 PFAS 제외)
PFAS 합산	250ppb	전구체 분해 포함 합산 분석 기준
총 불소 함량	50ppm	총 불소 50mg/kg 초과 시 추가 입증 필요

- EU 차원의 통일된 시험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집행위원회는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한 3단계 시험 절차를 권고함.
 - (1단계) 총 불소(TF) 정량 분석 → 50mg/kg 미만이면 적합으로 간주
 - (2단계) 열분해-GC/MS 등으로 유기 불소 여부 확인 → 유기 불소 50mg/kg 미만이면 적합으로 간주
 - (3단계) 직접 TOP(전체 산화 가능 전구체) 분석 → 25ppb 및 250ppb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PFAS 제한은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뿐 아니라 비의도적으로 존재하는 PFAS에도 적용되며, 포장재 기초 소재뿐 아니라 잉크·바니시·접착제 등 포장 단위 전체에 적용됨.
- 포장재 재고 소진 경과조치와 관련, PPWR은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음.
 - ' 26.8.12일 이후 EU 시장에 출시되는 식품접촉 포장재는 원칙적으로 식별정보와 제조자 정보를 포장에 직접 표시해야 하며, 크기·형태·기능상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수반 문서 활용 가능
 - ' 26.8.12일 이전에 출시된 포장재는 계속 유통이 가능하며 회수 의무는 없음.
 - ' 26.8.12일 전에 생산됐으나 해당 날짜까지 미출시된 재고는 폐기·재제조·재라벨링할 필요가 없으며, 식별정보와 제조자 정보는 수반 문서로 제공 가능
 - 수입 포장재는 통관 절차 완료(free circulation 승인) 시점이 '시장 출시' 기준이 되므로, '26.8.12일 이후 통관 예정 물량은 사전에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실무 대응 TIP

- 포장재 원료뿐 아니라 코팅·잉크·접착층 등 포장 구성요소별 PFAS 함유 여부 점검
- 공급업체에 PPWR 대응용 성분 정보 제공 요청을 통해 EU 바이어의 DoC·기술문서 요청에 사전 대비
- 모든 포장을 대상으로 SoC 식별·평가 및 최소화 관리체계 구축

재활용 가능성

☐ 재활용 가능성 요건 및 재생원료 함량 면제 조건

- (재활용 가능성) PPWR은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며, 지침 문서는 관련 요건의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설명함.
- 재활용 가능성 평가 시 포장 단위(packaging unit), 통합 구성요소(integrated components), 분리 구성요소(separate components)를 구분해 판단해야 함.
 - * 예시 : 병 본체에 부착된 라벨처럼 함께 폐기되는 요소는 통합 구성요소, 완전히 제거해야 내용물에 접근할 수 있는 필름이나 뚜껑은 분리 구성요소임.

- 재활용 가능성 의무에 대한 예외는 제6조 제11항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집행위원회가 임의로 추가 면제를 부여할 수 없음. 다만 혁신적 포장 (innovative packaging)은 제조업체가 시장 출시 전에 집행위원회와 관할 당국에 통지하고, 혁신성 및 환경적 편익을 기술문서로 입증하는 경우 최초 출시 연도 말부터 최대 5년간 제6조 제2항·제3항의 적용이 유예될 수 있음. 유예 종료 후에는 재활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시점	적용 내용
'26.8.12일부터	재활용 가능성 요건(제6조 제1항) 적용 시작. 다만, 이 시점에는 PPWR의 세부 설계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 조화표준 EN 13430:2004(재료 재활용을 통한 포장재 회수 요건)에 따른 준수로 충분하며, PPWR 방식의 적합성 평가서 (DoC) 작성은 위임법 발효 전까지 요구되지 않음.
'28년경	집행위원회가 재활용 설계(DfR, Design for Recycling) 요건 및 평가 방법론에 관한 위임법 채택 예정(제6조 제4항). 발효 시점부터 24개월의 이행 유예기간 부여
'30.1.1일부터	위임법에 따른 세부 재활용 설계(DfR) 요건(제6조 제2항(a)) 본격 적용. 위임법 발효 후 24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30.1.1일 중 늦은 날부터 적용
'35.1.1일부터	'규모 있는 재활용(recycled at scale)' 요건(제6조 제2항(b)) 적용. 관련 시행령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이 더 늦은 경우에는 그 시점이 기준이 됨.

- **(재생원료)** 플라스틱 포장재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가 부과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됨.
 - **(면제 ①)** 재생원료 사용이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되어 식품접촉 소재 규정(Regulation (EC) No 1935/2004) 위반을 초래하는 식품접촉용 플라스틱 포장재
 - **(면제 ②)** 전체 포장 단위 총 중량의 5% 미만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부품
 - 본 두 가지 면제 사례는 EU 당국 승인 없이 적용되나, 재생원료 함량 의무 준수 여부는 기술문서를 통해 입증해야 함.
 - 포장 단위가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각 구성요소를 제조한 공장이 해당 부품의 재생원료 함량을 개별 입증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주체가 이를 종합하여 기술문서를 완성함.

☑ 실무 대응 TIP

- 재활용성 입증 기준으로 현행 EN 13430:2004를 활용하여 포장 적합성 사전 점검
- 재활용 설계(DfR) 위임법은 '28.1.1일까지 채택 예정이므로, 중장기 포장 재설계 일정 수립
- 재생원료 함량 면제 적용 시, 면제 대상·중량비·식품안전상 사유를 기술문서에 명시
- * 공급업체로부터 소재 정보 사전 확보 필요

포장 및 라벨링

□ 포장 최소화 및 빈 공간 비율 요건

- PPWR은 포장재의 중량·부피를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포장 최소화 요건을 규정하며, 기존 지침(PPWD) 대비 아래와 같은 변화에 유의
 - '소비자 수용성'과 '마케팅'이 더 이상 정당화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중벽·이중 바닥 등 체감 부피를 늘리기 위한 목적의 포장 특성은 명시적으로 금지됨.
 - '25.2.11일 이전에 등록된 디자인권·상표권으로 보호되는 포장 형태, 또는 EU법상 지리적 표시(GI) 보호 제품의 포장재는 면제 대상임.
 - '29.12.31일까지는 기존 EN 13428:2004가 계속 적용되며, '30.1.1일부터 PPWR 제10조가 본격 적용됨. 집행위원회는 '27.2.12일까지 유럽표준화 위원회(CEN)에 조화표준(harmonised standards) 마련·개정을 요청할 예정임.
- 빈 공간 비율(empty space ratio) 요건은 포장 최소화 요건과 별도로 적용됨.
 - 집합포장·운송포장·전자상거래 포장에 대해 '30.1.1일부터(또는 관련 시행령 발효 후 3년 중 늦은 날) 빈 공간 비율이 최대 50%로 제한되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28.2.12일까지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임.
 - 판매포장의 빈 공간 요건은 별도의 수치 상한 없이, 포장 최소화 원칙(EN 13428:2004 기준 및 PPWR 제10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빈 공간 비율 요건의 의무 주체는 포장 제조업체가 아니라 그룹포장·운송포장·전자상거래 포장을 실제로 충전하는 경제운영자임.

☑ 실무 대응 TIP

- 소비자 수용성과 마케팅은 초과 포장의 정당화 사유 불인정, 포장 설계 전반 재검토 필요
- 전자상거래 기업은 배송 상자·완충재·내부 고정재까지 검토 필요

□ 운송 포장재 재사용 목표

- PPWR은 '30.1.1일부터(또는 관련 시행령 발효 후 18개월 중 늦은 날), EU 역내 운송 포장재 사용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사용 포장재 사용 의무 부과
 - (적용 대상) 팔레트, 접이식 플라스틱 상자, 트레이, 중간 벌크 컨테이너(IBC), 드럼, 캐니스터 등 소재·크기에 무관. 팔레트 래핑·스트랩 등 유연한 포장 형태 가능
 - (재사용 목표 비율) '30년부터 40% 이상이며, '40년까지 70%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의무주체) 운송 포장재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제주체(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이며, 포장재 제조업체가 아님.
- 지침 문서는 수입 운송 포장재에 대한 재사용 목표 적용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해석함.
 - 재사용 목표는 EU 내 첫 번째 창고 도착 및 통관 완료 시점부터 적용되며, 단일 최종 목적지로 직송되는 수입 물량은 별도 재포장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한편, 팔레트 래핑과 스트랩은 일반적인 재사용 목표의 적용 대상이지만, 팔레트 적재물의 고정·보호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26.5월 발효된 위임법에 따라 동일 기업의 EU 내 사업장 간 및 동일 회원국 내 기업 간 운송에 적용되는 100% 재사용 의무에서 면제됨.
- 아래의 경우에는 재사용 목표 적용이 면제됨.
 - 위험물 운송 관련 지침(Directive 2008/68/EC)에 따른 위험물 운송용 포장재, 주문자의 개별 요구사항에 맞게 맞춤 설계된 대형 기계류·장비·원자재 운송용 포장재
 - 다만, 맞춤 설계 사실을 기술문서로 입증해야 함.

☒ 실무 대응 TIP

- 팔레트·IBC·드럼 등 운송 포장재는 EU 통관 이후부터 재사용 목표 적용 대상
- EU 내 수입자·유통업자와의 계약 시 재사용 의무 부담 주체 명확히 규정
- 맞춤 설계 면제 적용 시 기술문서 사전 준비 필요

☐ 라벨링 요건

- PPWR은 포장 라벨링 기준을 EU 전역에서 통일하여, 원칙적으로 회원국이 별도의 라벨링 요건을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28.8.12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에 소비자 분리배출을 위한 픽토그램에 기반한 EU 조화표준 라벨 부착 의무 적용(라벨 세부 사양은 '26.8.12일까지 시행령으로 확정 예정)
- 해당 시점 이후 회원국은 EU 조화 라벨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국가별 분리배출 라벨을 요구할 수 없음. 다만 DRS 라벨과 디지털 방식의 EPR 표시는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음.
- 재사용 포장재에는 '29.2.12일부터 재사용 가능 여부를 알리는 라벨 및 QR 코드 등을 통한 추가 정보 제공 의무가 부과됨.
- 재생원료 함량 및 바이오 기반 함량 라벨은 자율 표시 사항이나, 표시하는 경우 '28.8.12일부터 EU의 표준화된 형식을 사용해야 함.

- 운송포장은 재질·분리배출 조화 라벨 의무에서 제외되나, 재사용 운송포장 등에는 별도의 라벨·QR코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 물품 배송에 사용되는 외부포장 등의 전자상거래 포장은 제외 대상이 아님.
- EPR 관련 정보는 물리적 라벨 부착이 금지되며, 디지털 형식으로만 제공해야 함.

☑ 실무 대응 TIP

- '28.8.12부터 EU 조화 라벨 전환 의무 → 포장재 디자인 변경 일정 사전 계획
- 재생원료 함량 자율 표시 시에도 '28년부터 EU 조화 형식 사용 의무 → 현행 표시 방식 적합성 사전 검토
- 전자상거래 포장재는 라벨링 의무 대상이므로 한국에서 EU로 직배송 박스에도 라벨 요건 적용

□ 포장 고유 식별 및 추적성 의무의 적용 단위 구체화(PPWR 제15조 제5항)

- (식별 단위) 모든 개별 포장에 각각 다른 일련번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포장 타입·모델·생산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배치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식별수단 사용 가능
- (표시 범위) 컵·뚜껑·라벨 등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포장 단위는 모든 구성요소에 각각 표시하지 않고, 하나의 구성요소에 필요한 식별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 허용
- (범용 포장재) 접착테이프, 일반 비닐봉투, 건조제 봉투와 같은 표준화된 포장재도 개별 제품이 아닌 생산 배치 수준으로 추적 가능
- (문서 연계) 식별정보를 통해 해당 포장의 기술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업은 포장 규격·배치번호와 관련 증빙자료를 연결하는 내부 관리체계 마련 필요

III. 향후 참고 사항

□ EU 집행위원회, ' 26.8.12일 이후 초기 시장감시 및 집행방향 제시

- 미준수 확인 시 즉각적인 판매금지·회수보다 우선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판매금지·회수·시장철회 등 후속 조치 가능
- 시정 기회는 적용 유예나 면책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세부 적용 시기별 표시·기술문서·책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업은 후속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
- 재활용 가능성, 재생원료 함량, 재사용 목표, 라벨링 세부 규격 등 일부 핵심 의무가 향후 위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구체화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PPWR 관련 주요 의무 적용 시점>

적용 시점	주요 의무	내용
'25.2.11일(규정발효일)	재사용 가능 포장 기본 요건 (제11조)	'25.2.11일 이전 출시 재사용 포장은 소급 적용 면제
'26.8.12일	PPWR 일반 적용 개시	모든 규정 기본 적용 시작
'26.8.12일	우려물질(SoC) 최소화 의무 (제5조 제1항)	포장재 내 우려물질 최소화 및 중금속 관련 일반 의무 포함
'26.8.12일	식품접촉 포장재 PFAS 제한 (제5조 제5항)	단일 25ppb/합산 250ppb/총불소 50ppm
'26.8.12일	재활용 가능성 원칙 (제6조 제1항)	EN 13430:2004 기준 적용. DoC 작성은 위임법 발효 전까지 불요
'28.2.12일	퇴비화 의무 포장(제9조)	차·커피백 등 일부 포장에 적용
'28.8.12일 또는 관련 시행령 발효 후 2년 중 늦은 날부터	EU 조화 라벨 의무화 (제12조 제1항)	소비자 분리배출 픽토그램 라벨 부착. 국가별 라벨 병행 금지
'29.1.1일	보증금 반환제(DRS) 구축 (제50조)	일회용 플라스틱 병(3L 이하)·금속 음료 용기 대상
'29.2.12일 또는 관련 시행령 발효 후 30개월 중 늦은 날부터	재사용 포장 라벨·QR코드 의무 (제12조 제2항)	재사용 여부 라벨 및 QR코드 추가 정보 제공
'30.1.1일 또는 관련 위임법 발효 후 2년 후 중 늦은 날	재활용 가능성(DfR) 기준 충족 (제6조 제2항(a))	위임법 발효 후 24개월 유예 (위임법 채택 목표 : '28년경)
'30.1.1일 또는 관련 시행령 발효 후 3년 후 중 늦은 날	재생원료 함량 의무 (제7조)	플라스틱 포장재 대상
'30.1.1일	포장 최소화 의무 (제10조)	'29.12.31일까지 EN 13428:2004 계속 적용
'30.1.1일 또는 관련 시행령 발효 후 3년 후 중 늦은 날	빈 공간 비율 50% 상한 (제24조)	집합·운송·전자상거래 포장 (계산 방법은 '28.2.12일까지 시행령 확정)
'30.1.1일	특정 일회용 포장 금지 (제25조, 부속서 V)	HORECA 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플라스틱 5% 초과 복합포장 포함)
'30.1.1일 또는 관련 시행령 발효 후 18개월 후 중 늦은 날	재사용 목표(reuse targets) (제29조)	- 운송포장 : '30년까지 재사용 포장 최소 40%, '40년까지 70% 달성을 위해 노력 - 음료 판매포장 : '30년까지 최소 10%, '40년까지 40% 달성을 위해 노력
'35.1.1일 또는 관련 시행령 발효 후 5년 후 중 늦은 날	대규모 재활용 기준(at scale) (제6조 제2항(b))	분리수거·선별·대규모 재활용 기준

자료 : PPWR 규정 원문과 지침 문서, FAQ를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작성